



제17858호(그2) 2012. 10. 2.(화)

2012. 10. 2.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법 른】

- 법률제11485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2
- 법률제11486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4
- 법률제1148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5

【고 시】

-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6호(운문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6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0호(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12

【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381호(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33

【기 타】

- 결정(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41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10월 2일

국 무 총 리 김 향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48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본문 중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당의”를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候補者가”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10시”를 “6시”로 한다.

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5제1항 중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제218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자신의 여권사본 및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21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로 본다.

제218조의11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람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관계가 제218조의5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18조의5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9제1항 중 “재외선거인등은”을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제218조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제1항에 따라 투표하여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의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 외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단서).
- 나.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김(안 제155조제2항).
- 다.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방법으로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추가함(안 제218조의4, 제218조의5, 제218조의11 및 제218조의19).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10월 2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기획재정부 장 박 재 완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2년 10월 2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

맹 형 규

●법률 제1148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5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45호(2011.12.30)로 승인 고시한 운문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금호강 유역내 자체 수원확보가 어려운 대구직할시외 5개 시군에 용수공급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좌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우안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나. 수 계 : 낙동강 수계 동창천

다. 명 칭 : 운문댐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 유역면적 : 301.3km²
- 댐 길이 : 407m
- 댐 높이 : 55m
- 댐 형식 : 중심코어형 록필댐
- 댐 체적 : 1,319,261m³

나. 여수로

-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변경없음)
 - 형 식 : 월류형 측수로식 방수로
 - 규 모
 - 월류 웨어폭 : 14~28m
 - 여수로 길이 : 200m
 - 수문 : 폭6.0m × 높이6.0m × 2문(Roller Gate)
- 월류형 터널식 여수로(비상여수로 신설) (변경없음)
 - 규모
 - 터널규격 : D=14.4m × 2련(L1=573m, L2=573m)
 - 수문
 - 수문 : 폭13.1m × 높이12.5m × 4문(Radial Gate)

다. 기타부대공 (변경없음)

- 홍수예경보 설비 1식, 진입도로 1식, 공원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

- 총저수량 : 135.3백만m³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생활 및 공업용수 137.2백만m³/년

5. 댐사용권자 : 한국수자원공사 (변경없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댐 건설비용 : 1,489억원 (변경없음)
-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 : 247억원(댐사용권자 90%, 지자체 10%)(변경없음)
- 비상여수로 건설비용 : (당초) 1,090억원
(변경) 1,053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건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비상여수로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가. 댐건설 : 1985년 ~ 1996년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9년 02월 ~ 2016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 당초 : 비상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205,426㎡)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 변경 : 비상여수로 건설에 사용될 토지(201,210㎡) : 별첨자료(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공원조성 등 1식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금회 운문댐 비상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관리단 (주소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산143, 전화번호 : 054-370-72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도	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0-4	가		9,247	0-4	가		8,364	국
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0-7	가		16	0-7	가		16	국
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06	유	11,209	6,637	506	유	11,209	6,856	국
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23	유	932	932	523	유	932	932	국
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38	유	9,232	317	538	유	9,232	592	국
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70	답	1,318	1,318	570	답	1,318	1,318	국
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70-2	도	2,200	274	570-2	도	2,200	358	국
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71	답	439	439	571	답	439	439	국
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72	전	150	150	572	전	150	150	국
1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73	전	1,063	808	573-3	전	778	778	박봉현
1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74	답	226	226	574	답	226	226	국
1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75	유	3,542	3,330	575	유	3,542	3,401	국
1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83-1	전	1,363	1,363	583-1	전	1,363	1,363	전고순
1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83-2	전	451	451	583-2	전	451	451	국
1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94	유	73	73	594	유	73	73	국
1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95	유	16,798	13,825	595	유	16,798	14,469	국
1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599	유	5,061	5,061	599	유	5,061	5,061	국
1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05	유	145	145	605	유	145	145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도	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1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10	유	621	621	610	유	621	621	국
2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11	유	476	476	611	유	476	476	국
2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13	유	1,388	1,388	613	유	1,388	1,388	국
2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16	유	380	380	616	유	380	380	국
2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17	유	212	212	617	유	212	212	국
2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18	유	5,221	5,221	618	유	5,221	5,221	국
2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22	유	8,051	8,051	622	유	8,051	8,051	국
2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23	임	460	460	623	임	460	460	국
2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24	전	500	500	624	전	500	500	국
2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24-1	유	877	877	624-1	유	877	877	국
2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26	전	401	401	626	전	401	401	국
3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26-1	전	6,830	1,052	626-1	전	6,830	1,052	국
3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26-4	전	10,906	1,096	626-4	전	10,906	1,096	국
3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29	전	142	142	629	전	142	142	국
3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32	전	2,882	2,882	632	전	2,882	2,882	국
3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33	전	1,319	1,319	633	전	1,319	1,319	국
3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34	전	1,451	1,451	634	전	1,451	1,451	국
3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3	전	305	305	643	전	305	305	국
3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4	도	382	87	644	도	382	87	국
3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5	전	684	684	645	전	684	684	국
3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5-1	도	892	650	645-1	도	892	650	국
4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6	전	507	507	646	전	507	507	국
4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6-2	유	27	27	646-2	유	27	27	국
4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7	유	355	355	647	유	355	355	국
4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8	전	2,703	2,703	648	전	2,703	2,703	박달현
4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8-2	도	2,047	1,721	648-2	도	2,047	1,721	국
4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49-1	답	1,324	3	649-1	답	1,324	3	국
4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59	임	609	1	-	-	-	-	박달현
4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60	도	1,044	12	660	도	1,044	12	국
4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64-1	천	1,540	429	664-1	천	1,540	429	국
4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64-37	유	377,590	3,610	664-37	유	377,590	3,707	국
5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64-38	천	1,895	618	664-38	천	1,895	618	국
5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64-40	천	910	66	664-40	천	910	133	국
5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87	도	2,321	1,151	687	도	2,321	1,211	국
5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88	도	456	433	688	도	456	456	국
5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89	도	1,387	563	689	도	1,387	573	국
5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89-1	유	428	428	689-1	유	428	428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도	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5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95	도	2,192	130	695	도	2,192	133	국
5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695-1	유	1,316	430	695-1	유	1,316	559	국
5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68	임	852	852	산68	임	852	852	김태식
5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68-1	유	115	115	산68-1	유	115	115	국
6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68-2	도	223	125	산68-2	도	223	125	국
6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69	임	728	728	산69	임	728	728	수원백씨선정 공파서지문중
6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69-1	유	3,381	3,381	산69-1	유	3,381	3,381	국
6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69-2	임	419	419	산69-2	임	419	419	국
6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69-3	임	535	535	산69-3	임	535	535	수원백씨선정 공파서지문중
6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69-4	도	94	69	산69-4	도	94	69	국
6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0	유	1,190	1,190	산70	유	1,190	1,190	국
6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3	임	4,367	2,791	산73-4	임	2,697	2,697	박재환 외 1인
6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3-1	유	4,578	4,578	산73-1	유	4,578	4,578	국
6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3-2	임	129	129	산73-2	임	129	129	국
7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3-3	도	1,141	666	산73-3	도	1,141	666	국
7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4	임	37,534	6,305	산74-2	임	7,657	7,657	박재팔
7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8-3	임	135,819	23,757	산78-14	임	25,417	25,417	한국전력공사 외 9 인
7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8-10	유	227	227	산78-10	유	227	227	국
7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78-12	임	1,280	1,280	산78-12	임	1,280	1,280	국
7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81	도	1,013	299	산81	도	1,013	299	국
7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산81-1	유	210	210	산81-1	유	210	210	국
7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07-1	도	5,968	1,408	107-1	도	5,968	1,408	국
7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11	전	165	69	111	전	165	56	국
7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12	전	235	235	112	전	235	235	국
8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1	전	64	64	121	전	64	64	국
8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2	전	744	744	122	전	744	744	김필곤
8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2-1	전	113	113	122-1	전	113	113	김필곤
8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2-2	전	128	128	122-2	전	128	128	김필곤
8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3	전	2,122	2,122	123	전	2,122	2,122	지향숙외2인
8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4	전	1,934	1,934	124	전	1,934	1,934	국
8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5	답	580	580	125	답	580	580	국
8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6	답	1,220	1,220	126	답	1,220	1,220	국
8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7	답	576	576	127	답	576	576	국
8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8-1	답	591	591	128-1	답	591	591	국
9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8-2	도	268	268	128-2	도	268	268	국
9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9	답	899	899	129	답	899	899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도	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9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29-1	도	4,553	2,080	129-1	도	4,553	1,651	국
9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0	답	721	721	130	답	721	721	국
9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1-1	답	129	129	131-1	답	129	129	국
9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1-2	답	889	889	131-2	답	889	889	국
9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2	답	800	800	132	답	800	800	국
9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3	답	932	932	133	답	932	932	국
9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4	전	628	628	134	전	628	628	국
9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5	답	2,360	2,360	135	답	2,360	2,360	국
10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6	전	893	893	136	전	893	893	국
10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7	전	777	777	137	전	777	777	국
10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8	전	1,322	1,322	138	전	1,322	1,322	국
10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9-1	전	734	734	139-1	전	734	734	국
10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39-2	전	618	618	139-2	전	618	618	국
10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0	전	942	942	140	전	942	942	국
10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1	전	1,597	1,597	141	전	1,597	1,597	국
10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2	임	602	602	142	임	602	602	김기곤
10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3	묘	542	542	143	묘	542	542	김봉선
10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4-1	전	1,970	30	144-1	전	1,970	391	국
11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4-2	전	407	52	144-2	전	407	407	국
11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5	전	2,271	45	145	전	2,271	481	국
11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6	전	919	169	146	전	919	187	국
11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	-	-	-	147-1	답	516	4	국
11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7-3	답	1,226	71	147-3	답	1,226	71	국
11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48	답	1,726	748	148	답	1,726	748	국
11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0	임	21,364	4,135	150	임	21,364	4,444	국
11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0-11	임	800	417	-	-	-	-	최병철
11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0-12	임	204	204	-	-	-	-	최병철
11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	-	-	-	151	답	1,140	620	국
12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2	답	664	41	152	답	664	256	국
12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	-	-	-	154	전	1,018	297	국
12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5	전	1,005	8	155	전	1,005	210	국
12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6	전	1,451	5	156	전	1,451	19	국
12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7	전	1,660	1,570	-	-	-	-	국
12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58	답	1,012	678	-	-	-	-	국
12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99-6	천	24,304	117	199-6	천	24,304	117	국
12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0	구	4,175	1,567	1840	구	4,175	1,567	국
12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1	천	207,329	12,316	1842-1	천	207,329	7,553	국

일련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도	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12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2-6	제	14,981	5	-	-	-	-	국
13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	-	-	-	1842-40	수	1,025	68	국
13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1846	도	460	130	-	-	-	-	국
13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	임	53,020	15,709	산30-3	임	14,527	14,527	김해김씨 삼현좌방지중중
13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	-	-	-	산30-4	임	451	451	김해김씨 삼현좌방지중중
13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1	임	1,393	50	산30-1	임	1,393	62	국
135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0-2	임	1,918	1,918	산30-2	임	1,918	1,918	김진곤
136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1-1	임	13,195	1,525	-	-	-	-	국
137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산32-2	임	11,970	105	-	-	-	-	국
138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산131	임	9,689	461	-	-	-	-	국
13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0	수	9,808	18	1410	수	9,808	94	국
140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	수	1,523	703	1414	수	1,523	785	국
141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1	도	1,486	1,215	1414-1	도	1,486	1,202	국
142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4-2	도	2,420	68	1414-2	도	2,420	101	국
143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7-2	수	331	57	1417-2	수	331	97	국
144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	1417-5	구	133	62	1417-5	구	133	62	국
합계								205,426				201,2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90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I.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명칭(변경없음)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3. 사업목적(변경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9. 8. 10일 기 조성된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입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통한 의료 · 보건 산업분야의 기술 혁신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 를 통한 의료산업분야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일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 면 적 : 1,131,054.5㎡ (오송생명과학단지 4,627,602.8㎡)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사업의 시행방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 기정 : 2009. 12. ~ 2012. 12.
- 변경 : 2009. 12. ~ 2015. 12.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 m², %)

구 분	합 계	대 지	공 원	공 장	학 교	도 로	수도용지	비고
면 적	1,131,054.5	190,777.6	129,859.3	301,759.6	340,057.8	160,457.6	8,142.6	
비 율	100.0	16.9	11.5	26.7	30.0	14.2	0.7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율(%)	비고
합 계		1,131,054.5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4,340.4	0.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263.7	0.4	
공업 지역	소 계	660,707.3	58.4	
	일반공업지역	11,735.2	1.0	
	준공업지역	648,972.1	57.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61,743.1	40.8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 ²)	비율 (%)	비 고
합 계		1,131,054.5	100.0	
생산시설용지	외국인 투자지역	-	-	-
		-	-	-
연구시설용지	연구시설	462,784.5	40.9	-
		462,784.5	40.9	
지원시설용지		29,752.7	2.6	-
학교용지	대학	340,057.8	30.1	-
		340,057.8	30.1	-
공공시설용지	도 로	298,459.5	26.4	-
		160,457.6	14.2	
공 원		111,338.6	9.8	▶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18,520.7	1.6	▶ 경관녹지 (2개소)
배수지		7,014.7	0.6	▶ 근린공원 내 각
가압장		1,127.9	0.1	1개소

8.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총괄

■ 도로 총괄

구분		개소	연장(m)	면적(m ²)	비고
합계		12	8,058 (6,821)	192,641 (160,457.6)	
대로	1류	1	2,229 (1,207)	78,015 (42,245)	
	2류	-	-	-	
	3류	1	1,106 (941)	27,650 (23,525)	
중로	1류	3	2,354 (2,304)	50,666 (49,666)	
	2류	6	2,228 (2,228)	35,464 (35,464)	
	3류	-	-	-	
소로	1류	-	-	-	
	2류	-	-	-	
	3류	1	141 (141)	846 (846)	
가각및법면등				(8,711.6)	

주) ()안의 연장 및 면적은 구역내 편입된 연장 및 면적임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간선 도로	2,229 (1,207)	동측 지구계	서측 지구계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3	2	25	간선 도로	1,106 (941)	대로 1-1	대로 3-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2	22	집산 도로	800 (800)	대로 3-3	대로 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4	20	집산 도로	561 (511)	대로 1-1	중로 1-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8	22	집산 도로	993 (993)	대로 1-1	대로 3-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0	15	집산 도로	457 (457)	대로 3-2	중로 1-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11	17	집산 도로	458 (458)	대로 3-2	중로 1-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29	15	집산 도로	260 (260)	중로 1-8	중로 2-3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30	15	집산 도로	244 (244)	대로 3-2	중로 2-2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31	17	집산 도로	564 (564)	대로 3-2	중로 2-2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32	15	집산 도로	245 (245)	대로 1-1	중로 2-3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41 (141)	중로 1-8	배수지	일반 도로	-		

주) ()안의 연장은 구역내 편입된 연장임

2) 공원계획(변경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공원 계획에 있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기 결정된 공원(근린공원)을 유지토록 계획함

시설명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111,338.6	
근린공원	3	지구 중앙구릉 대학교변	111,338.6	

주) 기정 면적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지 선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내 편입된 면적임

3) 녹지계획(변경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녹지 계획에 있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기 결정된 녹지(경관녹지)을 유지토록 계획함

시설명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18,520.7	
경관녹지	1	중1-4호선변	11,216.1	
경관녹지	2	중2-29호선변	7,304.6	

주) 기정 면적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지 선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내 편입된 면적임

4) 상수도 시설계획(변경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수도시설에 있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기 결정된 수도시설(배수지 및 가압장)을 유지토록 계획함

시설명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8,142.6	
배수지	1	3호 근린공원 중심부	7,014.7	
상수도 가압장	2	3호 근린공원	1,127.9	

주) 기정 면적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지 선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내 편입된 면적임

5) 학교시설계획(변경없음)

○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있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기 결정된 학교를 유지토록 계획함

시설명	시설의 세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	-	340,057.8	
학교	대학교	1	중1-8호선 서측	340,057.8	

주) 기정 면적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입지 선정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역내 편입된 면적임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 총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금액(백만원)	비 고
계	72,196	
조성비	-	기 조성
용지비	72,196	

2) 년차별 투자 계획(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	년차별 투자계획(백만원)			
		‘09까지	‘10	‘11	‘12이후
계	72,196	20,147	3,817	7,200	41,032

주)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3)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백만원)	부 담 주 체	비 고
계	72,196	충청북도 자체재원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 개발된 토지의 공급(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관리처분계획
합 계		1,131,054.5	
소 계		832,595	
연구시설용지		462,784.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함
생산시설용지		-	
학 교 용 지		340,057.8	
지원시설용지		29,752.7	
공공시설용지		298,459.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도로	160,457.6	
	공원	111,338.6	
	녹지	18,520.7	
	배수지	7,014.7	
	가압장	1,127.9	

2) 공공시설(변경없음)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II.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1. 사업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한국전력공사 사장(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 보건복지부 장관(지원시설용지의 한의학단지 삭제에 한함)
- 충청북도지사(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함)

3. 사업목적(변경없음)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일원

○ 면 적 : 4,627,602.8㎡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지구계에서 제척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 사업의 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 기정 : 1997. 09. 23 ~ 2013. 12. 3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2009. 12 ~ 2012. 12)

- 변경 : 1997. 09. 23 ~ 2015. 12. 31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2009. 12 ~ 2015. 12)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 ㎡)

구분	합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 야	대 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면적	4,627,602.8	1,264,935	1,489,436	52,880	43,793	1,078,566	186,503	24,366	12,890	121,012
구분	하 천	제 방	구 거	유 지	묘 지	잡종지	수도용지	종교용지	확정측량 결과오차	
면적	55,558	1,135	101,582	144,008	3,378	27,894	16,005	1,676	608.9	-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627,602.8	100.0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556,231.5	12.0	
		1종일반주거지역			540,107.0	11.7	
		2종일반주거지역			175,024.8	3.8	
		3종일반주거지역			149,006.9	3.2	
		3종일반주거지역			216,075.3	4.7	
		준주거지역			16,124.5	0.3	
	상업지역	상업지역			178,845.8	3.9	
		일반상업지역			178,845.8	3.9	
	녹지지역	녹지지역			1,048,934.4	22.7	
		자연녹지지역			1,048,934.4	22.7	
	공업지역	공업지역			2,843,591.1	61.4	
		일반공업지역			1,644,431.5	35.5	
		준공업지역			1,199,159.6	25.9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비율(%)	비 고
합	계	4,627,602.8	100.0	
연 구 시 설 용 지		863,041.3	18.7	
	연 구 시 설	863,041.3	18.7	
생 산 시 설 용 지		1,353,699.3	29.3	
	생 산 시 설	1,353,699.3	29.3	
	외국인투자지역	-	-	
학 교 용 지		381,760.1	8.2	
	대 학	340,057.8	7.3	
	유 치 원	2,000.0	-	
	초 등 학 교	13,166.6	0.3	
	중 학 교	13,228.9	0.3	
	고 등 학 교	13,306.8	0.3	
지 원 시 설 용 지		143,604.6	3.1	종합의료센터, 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기타지원 등
상 업 용 지		61,387.1	1.3	
주 거 용 지		346,183.9	7.5	
	공 동 주 택 용 지	250,100.8	5.4	
	단 독 주 택 용 지	91,004.9	2.0	
	준 주 거 용 지	5,078.2	0.1	
공 공 시 설 용 지		1,477,926.5	31.9	
	도 로	645,088.8	13.9	
	공 원	448,643.8	9.7	
	녹 지	206,724.8	4.5	
	배 수 지	7,014.7	0.1	
	가 압 장	1,127.9	-	
	공 공 공 지	1,513.8	-	
	주 차 장	27,000.0	0.6	
	주 유 소	2,390.9	0.1	
	종 교 시 설	7,380.7	0.2	
	하 천	55,534.0	1.2	
	농 업 용 수 로	11,270.6	0.2	
	폐 수 처 리 시 설	27,697.2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0.6	
	전 기 공 급 시 설	3,850.5	0.1	
	오 수 펌 프 장	743.6	-	
	공 공 지 원 시 설	4,933.3	0.1	
	농 업 용 양 수 장	284.0	-	

8.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총괄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비 고
합 계				125	40,855.5	645,088.8	
소 계				4	6,660	-	-
진입도로	대로	1	35	1	3,200	-	국가 시행
		1	35	1	1,700	-	국가 시행
		1	35	1	1,400	-	국가 시행
		1	35	1	360	-	국가 시행
소 계				121	34,195.5	645,088.8	
일반도로	대로	1	35	1	2,229	78,015	
		3	25	6	6,242	156,050	
	중로	1	20~22	9	7,421	152,006	
		2	15~17	33	8,683	133,239	
		3	12	12	3,050	36,600	
	소로	1	10	5	621.5	6,266	
		2	8	25	3,008	24,064	
		3	4~6	7	474	2,290	
	지방도 508		14~19	2	1,464	17,701	
	보행자전용도로		6~10	20	1,003	7,901	
가각및법면 등					30,956.8		

나. 도로시설조서(단지내)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1	35	2,229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	25	1,770	진입도로1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	25	1,106	대로 1-1호선	대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5	1,691	대로 1-1호선	대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4	25	991	대로 1-1호선	공공공지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5	25	403	남측지구계	공공공지2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6	25	281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0	121	대로 3-1호선	중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2	800	대로 3-3호선	대로 3-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0	390	대로 3-3호선	지방도 50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0	561	대로 1-1호선	중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	20	968	대로 1-1호선	대로 3-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	20	1,445	대로 1-1호선	대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	20	514	대로 1-1호선	중로1-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	22	993	대로 1-1호선	대로 3-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	20	1,629	대로 3-1호선	대로 3-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376	중로 2-8호선	중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679	중로 1-1호선	중로 2-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80	근린공원3호 북측	대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214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2	5	15	186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515	대로 3-1호선	중로 2-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7	475	대로 3-3호선	중로 1-9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259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399	중로 2-7호선	중로 1-9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457	대로 3-2호선	중로 1-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7	458	대로 3-2호선	중로 1-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320	대로 3-3호선	지방도 50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342	중로 1-4호선	대로 3-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30	대로 1-1호선	중로 2-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5	85	대로 1-1호선	중로 2-1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6	15	159	중로 1-5호선	중로 2-1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7	15	177	중로 2-15호선	중로 2-1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333	대로 3-4호선	중로 1-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3	15	98	대로 3-4호선	중로 3-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4	15	105	대로 3-4호선	중로 2-2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5	15	140	중로 2-27호선	중로 2-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6	15	240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7	15	80	대로 3-6호선	중로 2-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9	15	260	중로 1-8호선	중로 2-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0	15	244	대로 3-2호선	중로 2-29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1	17	564	대로 3-2호선	중로 1-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2	15	245	대로 1-1호선	중로 2-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3	15	244	중로 1-6호선	중로 2-3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4	17	208	중로 1-6호선	중로2-3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5	15	306	지방도 508호선	대로 3-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6	15	155	중로 2-35호선	중로 2-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7	15	85	중로 2-35호선	대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8	15	165	중로 2-35호선	중로 2-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781	중로 2-8호선	중로 2-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177	대로 3-3호선	중로 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139	대로 1-1호선	중로 1-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139	대로 1-1호선	중로 1-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296	대로 3-4호선	지방도 50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305	대로 3-4호선	지방도 50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	12	323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	12	133	중로 3-7호선	중로 3-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9	12	221	대로 3-6호선	중로 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	12	255	대로 3-4호선	중로 1-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	12	176	중로 1-5호선	중로 3-10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	12	105	중로 1-5호선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142	중로 3-7호선	중로 3-6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237	대로 3-6호선	중로 3-7호선	일반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1	3	10	80	중로 3-9호선	소(특) 3-8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72	중로 3-9호선	소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71	소로 1-2호선	소(특) 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	10	19.5	중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124	중로 3-7호선	중로 3-6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73	중로 3-8호선	소로 2-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73	중로 3-8호선	소로 2-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81	소로 2-3호선	소로 2-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75	중로 3-8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77	중로 3-8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91	소로 2-6호선	소로 2-5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	8	223	중로 3-6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76	소로 1-1호선	소로 2-8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8	101	소로 2-8호선	소로 2-9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	8	174	중로 3-7호선	소로 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	8	73	중로 3-9호선	소로 2-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3	8	73	중로 3-9호선	소로 2-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	8	122	소로 1-3호선	소로 2-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5	8	77	중로 3-9호선	소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6	8	75	중로 3-9호선	소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7	8	136	소로 1-4호선	소로 2-16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8	8	290	소로 1-5호선	소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9	8	82	소로 1-2호선	소로 2-18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	8	149	소로 1-5호선	소로 2-19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	8	281	중로 3-11호선	중로 3-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2	8	134	소로 2-21호선	소로 2-2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3	8	191	중로 3-11호선	중로 3-10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4	8	61	중로 3-11호선	소로 2-23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5	8	96	소로 2-23호선	소로 2-24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141	중로 1-8호선	배수지	배수지진입도로
기정	소로	3	2	4	12	중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24	중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4	179	중로 2-4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4	184	중로 2-5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4	29	중로 1-9호선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4	57	소로 3-6호선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	6	32	중로 1-5호선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특)	1	1	10	126	대로 3-1호선	근린공원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1	3	13	25	중로 3-6호선	초등학교 남측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1	8	26	대로 3-4호선	중로 2-17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2	8	26	대로 3-4호선	중로 2-36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3	8	26	지방도 508호선	중로 2-38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4	8	125	어린이공원1	중로 1-5호선	보행자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특)	2	5	8	246	중로 2-18호선	어린이공원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6	8	127	대로 3-4호선	어린이공원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7	8	26	대로 3-6호선	중로 2-25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1	6	30	대로 1-1호선	중로 2-13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2	6	28	대로 1-1호선	중로 2-13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	6	27	대로 1-1호선	중로 2-16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4	6	30	대로 1-1호선	중로 2-17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5	6	20	지방도 508호선	소로 2-8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6	6	18	대로 3-5호선	소로 2-18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7	6	26	대로 3-5호선	소로 2-18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8	6	27	대로 3-4호선	소로 2-11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9	6	17	대로 3-4호선	소로 2-21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10	6	18	대로 3-4호선	소로 2-21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11	6	9	소로 2-23호선	완충녹지7	보행자도로
기정	지방도 508		1	19	727	대로 3-5호선	대로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지방도 508		2	14	737	대로 1-1호선	완충녹지4	일반도로

다. 진입도로 계획(단지외) : 변경없음

2) 공원계획 : 변경없음

3)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	206,724.8	
녹 지	완충녹지 1	북측지구계변	37,526.3	
	완충녹지 2	폐기물처리시설변	7,519.6	
	완충녹지 3	상정천변	19,016.5	
	완충녹지 4	동측 지구계	55,985.2	
	완충녹지 5	폐수처리시설변	2,906.6	
	완충녹지 6	대3-4호선변	12,124.2	
	완충녹지 7	농업용수로변	6,702.9	
	완충녹지 8	대3-5호선변	3,929.4	
	완충녹지 9	중1-7호선변	11,219.9	
	완충녹지 10	중1-6호선변	16,735.3	
	완충녹지 11	돌다리못 서측변	12,143.3	
	완충녹지 12	대3-5호선 남측	2,394.9	
	경관녹지 1	중1-4호선변	11,216.1	
	경관녹지 2	중2-29호선변	7,304.6	

4)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513.8	
공공공지 1	지구남측 철로변	1,513.8	

5) 상수도 시설계획 : 변경없음

6) 하수도 시설계획 : 변경없음

7) 저류지 시설계획 : 변경없음

- 8) 폐기물처리장 계획 : 변경없음
 9) 전기공급설비 계획 : 변경없음
 10) 학교시설계획 : 변경없음
 11) 공공지원시설 계획 : 변경없음
 12) 종교시설 계획 : 변경없음
 13)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시 설 명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27,000.0	
주차장 시설	1	중 3-4호선 북측	1,039.1	
	2	중 3-2호선 북측	825.2	
	3	중 2-13호선 북측	9,884.1	
	4	중 2-15호선 서측	2,713.9	
	5	중 2-17호선 남측	1,367.4	
	6	중 2-37호선 서측	1,948.0	
	7	중 2-23호선 남측	6,743.80	
	8	소 1-3호선 남측	575.0	
	9	소 1-5호선 남측	559.0	
	10	중 2-25호선 남측	1,344.5	

- 14) 소하천계획 : 변경없음
 1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변경없음

9.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0.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변경없음)
 11.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 개발된 토지의 공급(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 ²)	관리처분계획
합 계	4,627,602.8	
연구시설용지	863,04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함
생산시설용지	1,353,699.3	
학 교 용 지	381,760.1	
상 업 용 지	61,387.1	
지원시설용지	143,604.6	
주 거 용 지	346,183.9	
공공지원시설	4,933.3	
주 차 장	27,000.0	
주 유 소	2,390.9	
종 교 시 설	7,380.7	
폐기물 처리시설	26,727.9	
전기공급시설	3,850.5	
농업용양수장	284.0	
도로	645,088.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당해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공원	448,643.8	
녹지	206,724.8	
배수지	7,014.7	
공공공지	1,513.8	
하천	55,534.0	
농업용수로	11,270.6	
폐수처리시설	27,697.2	
오수펌프장	743.6	
가압장	1,127.9	

Ⅲ. 지구단위계획서지정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구분	면 적(m ²)	비 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구역 1	2,000,286.8	
		지구단위구역 2	13,616.2	
		지구단위구역 3	9,864.0	
		계	2,023,767.0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사유(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변경없음)

4.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의 개요(변경)

(1)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위 치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일원	
면 적	4,627,602.8m ²	4,627,602.8m ²	
사업비	3,789억원	3,789억원	
사업기간	1997. 09. 23 ~ 2013. 12. 31	1997. 09. 23 ~ 2015. 12. 31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주 택 유 형	면 적(m ²)	수용인구(人)	수용가구(호)	비 고
계	341,105.7	14,179	4,574	3.1인/호
단 독	91,004.9	1,057	341	단독:공동면적 비율 = 26.7% : 73.3%
공 동	250,100.8	13,122	4,233	

● 토지이용계획 (오송생명과학단지)(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비율(%)	비 고
합 계	4,627,602.8	100.0	
연 구 시 설 용 지	863,041.3	18.7	
연 구 시 설	863,041.3	18.7	
생 산 시 설 용 지	1,353,699.3	29.3	
생 산 시 설	1,353,699.3	29.3	
외 국 인 투 자 지 역	-	-	

학	교	용	지	381,760.1	8.2	
	대		학	340,057.8	7.3	
	유	치	원	2,000.0	-	
	초	등	학	교	13,166.6	0.3
	중		학	교	13,228.9	0.3
	고	등	학	교	13,306.8	0.3
지 원 시 설 용 지				143,604.6	3.1	종합의료센터, 정보센터, 창업보육센터, 기타지원등
상 업 용 지				61,387.1	1.3	
주	거 용 지			346,183.9	7.5	
	공	동	주 택 용 지	250,100.8	5.4	
	단	독	주 택 용 지	91,004.9	2.0	
	준	주	거 용 지	5,078.2	0.1	
공	공 시 설 용 지			1,477,926.5	31.9	
	도 로			645,088.8	13.9	
	공 원			448,643.8	9.7	
	녹 지			206,724.8	4.5	
	배 수 지			7,014.7	0.1	
	가 압 장			1,127.9	-	
	공 공 공 지			1,513.8	-	
	주 차 장			27,000.0	0.6	
	주 유 소			2,390.9	0.1	
	중 교 시 설			7,380.7	0.2	
	하 천			55,534.0	1.2	
	농 업 용 수 로			11,270.6	0.2	
	폐 수 처 리 시 설			27,697.2	0.6	
	폐 기 물 처 리 시 설			26,727.9	0.6	
	전 기 공 급 시 설			3,850.5	0.1	
	오 수 펌 프 장			743.6	-	
	공 공 지 원 시 설			4,933.3	0.1	
	농 업 용 양 수 장			284.0	-	

● 토지이용계획(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비율 (%)	비 고
합 계	1,131,054.5	100.0	
생산시설용지	—	—	—
외국인 투자지역	—	—	—
연구시설용지	462,784.5	40.9	—
연구시설	462,784.5	40.9	
지원시설용지	29,752.7	2.6	—
학교용지	340,057.8	30.1	—
대학	340,057.8	30.1	—
공공시설용지	298,459.5	26.4	—
도 로	160,457.6	14.2	
공 원	111,338.6	9.8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18,520.7	1.6	▶경관녹지 (2개소)
배수지	7,014.7	0.6	▶근린공원 내 각 1개소
가압장	1,127.9	0.1	

IV.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1)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간의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합 계	4,627,602.8	100.0	
주 거 지 역	556,231.5	12.0	
일 반 주 거 지 역	540,107.0	11.7	
1종일반주거지역	175,024.8	3.8	
2종일반주거지역	149,006.9	3.2	
3종일반주거지역	216,075.3	4.7	
준 주 거 지 역	16,124.5	0.3	
상 업 지 역	178,845.8	3.9	
일 반 상 업 지 역	178,845.8	3.9	
녹 지 지 역	1,048,934.4	22.7	
자 연 녹 지 지 역	1,048,934.4	22.7	
공 업 지 역	2,843,591.1	61.4	
일 반 공 업 지 역	1,644,431.5	35.5	
준 공 업 지 역	1,199,159.6	25.9	

※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5,000): 별첨 2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변경없음)

1) 도 로

① 도로총괄조서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125	40,855.5	645,088.8	
소 계				4	6,660	-	-
진 입 도 로	대로	1	35	1	3,200	-	국가 시행
		1	35	1	1,700	-	국가 시행
		1	35	1	1,400	-	국가 시행
		1	35	1	360	-	국가 시행
소 계				121	34,195.5	645,088.8	
일 반 도 로	대로	1	35	1	2,229	78,015	
		3	25	6	6,242	156,050	
	중로	1	20~22	9	7,421	152,006	
		2	15~17	33	8,683	133,239	
		3	12	12	3,050	36,600	
	소로	1	10	5	621.5	6,266	
		2	8	25	3,008	24,064	
		3	4~6	7	474	2,290	
	지방도 508		14~19	2	1,464	17,701	
	보행자전용도로		6~10	20	1,003	7,901	
가각및법면 등					30,956.8		

②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1	35	2,229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	25	1,770	진입도로1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	25	1,106	대로 1-1호선	대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5	1,691	대로 1-1호선	대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4	25	991	대로 1-1호선	공공공지1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5	25	403	남측지구계	공공공지2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6	25	281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	20	121	대로 3-1호선	중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2	22	800	대로 3-3호선	대로 3-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0	390	대로 3-3호선	지방도 508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0	561	대로 1-1호선	중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5	20	968	대로 1-1호선	대로 3-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6	20	1,445	대로 1-1호선	대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7	20	514	대로 1-1호선	중로1-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8	22	993	대로 1-1호선	대로 3-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9	20	1,629	대로 3-1호선	대로 3-3호선	일반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2	1	15	376	중로 2-8호선	중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679	중로 1-1호선	중로 2-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80	근린공원3호 북측	대로 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214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186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515	대로 3-1호선	중로 2-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7	475	대로 3-3호선	중로 1-9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259	대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399	중로 2-7호선	중로 1-9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457	대로 3-2호선	중로 1-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7	458	대로 3-2호선	중로 1-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320	대로 3-3호선	지방도 50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342	중로 1-4호선	대로 3-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	30	대로 1-1호선	중로 2-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5	85	대로 1-1호선	중로 2-1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6	15	159	중로 1-5호선	중로 2-1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7	15	177	중로 2-15호선	중로 2-1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333	대로 3-4호선	중로 1-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3	15	98	대로 3-4호선	중로 3-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4	15	105	대로 3-4호선	중로 2-2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5	15	140	중로 2-27호선	중로 2-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6	15	240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7	15	80	대로 3-6호선	중로 2-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9	15	260	중로 1-8호선	중로 2-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0	15	244	대로 3-2호선	중로 2-29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1	17	564	대로 3-2호선	중로 1-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2	15	245	대로 1-1호선	중로 2-3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3	15	244	중로 1-6호선	중로 2-3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4	17	208	중로 1-6호선	중로2-33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5	15	306	지방도 508호선	대로 3-4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6	15	155	중로 2-35호선	중로 2-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7	15	85	중로 2-35호선	대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8	15	165	중로 2-35호선	중로 2-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2	781	중로 2-8호선	중로 2-2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2	12	177	대로 3-3호선	중로 2-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3	12	139	대로 1-1호선	중로 1-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	12	139	대로 1-1호선	중로 1-6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	12	296	대로 3-4호선	지방도 50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	12	305	대로 3-4호선	지방도 508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7	12	323	대로 3-4호선	대로 3-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8	12	133	중로 3-7호선	중로 3-6호선	일반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중로	3	9	12	221	대로 3-6호선	중로 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0	12	255	대로 3-4호선	중로 1-5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1	12	176	중로 1-5호선	중로 3-10호선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2	12	105	중로 1-5호선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142	중로 3-7호선	중로 3-6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237	대로 3-6호선	중로 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80	중로 3-9호선	소(특) 3-8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72	중로 3-9호선	소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71	소로 1-2호선	소(특) 3-7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6	10	19.5	중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124	중로 3-7호선	중로 3-6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73	중로 3-8호선	소로 2-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73	중로 3-8호선	소로 2-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81	소로 2-3호선	소로 2-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75	중로 3-8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77	중로 3-8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91	소로 2-6호선	소로 2-5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8	8	223	중로 3-6호선	소로 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9	8	76	소로 1-1호선	소로 2-8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8	101	소로 2-8호선	소로 2-9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1	8	174	중로 3-7호선	소로 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	8	73	중로 3-9호선	소로 2-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3	8	73	중로 3-9호선	소로 2-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4	8	122	소로 1-3호선	소로 2-13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5	8	77	중로 3-9호선	소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6	8	75	중로 3-9호선	소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7	8	136	소로 1-4호선	소로 2-16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8	8	290	소로 1-5호선	소로 1-2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9	8	82	소로 1-2호선	소로 2-18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	8	149	소로 1-5호선	소로 2-19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1	8	281	중로 3-11호선	중로 3-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2	8	134	소로 2-21호선	소로 2-2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3	8	191	중로 3-11호선	중로 3-10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4	8	61	중로 3-11호선	소로 2-23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5	8	96	소로 2-23호선	소로 2-24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141	중로 1-8호선	배수지	배수지진입도로
기정	소로	3	2	4	12	중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6	24	중로 3-1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4	179	중로 2-4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4	184	중로 2-5호선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6	4	29	중로 1-9호선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4	57	소로 3-6호선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8	6	32	중로 1-5호선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특)	1	1	10	126	대로 3-1호선	근린공원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1	3	13	25	중로 3-6호선	초등학교 남측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1	8	26	대로 3-4호선	중로 2-17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2	8	26	대로 3-4호선	중로 2-36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3	8	26	지방도 508호선	중로 2-38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4	8	125	어린이공원1	중로 1-5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5	8	246	중로 2-18호선	어린이공원2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6	8	127	대로 3-4호선	어린이공원1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2	7	8	26	대로 3-6호선	중로 2-25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1	6	30	대로 1-1호선	중로 2-13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2	6	28	대로 1-1호선	중로 2-13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3	6	27	대로 1-1호선	중로 2-16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4	6	30	대로 1-1호선	중로 2-17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5	6	20	지방도 508호선	소로 2-8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6	6	18	대로 3-5호선	소로 2-18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7	6	26	대로 3-5호선	소로 2-18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8	6	27	대로 3-4호선	소로 2-11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9	6	17	대로 3-4호선	소로 2-21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10	6	18	대로 3-4호선	소로 2-21호선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특)	3	11	6	9	소로 2-23호선	완충녹지7	보행자도로
기정	지방도 508		1	19	727	대로 3-5호선	대로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지방도 508		2	14	737	대로 1-1호선	완충녹지4	일반도로

2) 공 원 : 변경없음

3) 녹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	206,724.8	
1	녹 지	완충녹지	북측지구계변	37,526.3	
2	녹 지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시설변	7,519.6	
3	녹 지	완충녹지	상정천변	19,016.5	
4	녹 지	완충녹지	동측 지구계	55,985.2	
5	녹 지	완충녹지	폐수처리시설변	2,906.6	
6	녹 지	완충녹지	대3-4호선변	12,124.2	
7	녹 지	완충녹지	농업용수로변	6,702.9	
8	녹 지	완충녹지	대3-5호선변	3,929.4	
9	녹 지	완충녹지	중1-7호선변	11,219.9	
10	녹 지	완충녹지	중1-6호선변	16,735.3	
11	녹 지	완충녹지	돌다리못 서측변	12,143.3	
12	녹 지	완충녹지	대3-5호선 남측	2,394.9	
1	녹 지	경관녹지	중1-4호선변	11,216.1	
2	녹 지	경관녹지	중2-29호선변	7,304.6	

- 4) 상수도시설 : 변경없음
 5) 공공공지 : 변경없음
 6) 주차장(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계		-	-	27,000.0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3-4호선 북측	1,039.1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3-2호선 북측	825.2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2-13호선 북측	9,884.1	
4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2-15호선 서측	2,713.9	
5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2-17호선 남측	1,367.4	
6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2-37호선 서측	1,948.0	
7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2-23호선 남측	6,743.80	
8	주차장	노외주차장	소 1-3호선 남측	575.0	
9	주차장	노외주차장	소 1-5호선 남측	559.0	
10	주차장	노외주차장	중 2-25호선 남측	1,344.5	

- 7) 하천 : 변경없음
 8) 폐수처리시설 : 변경없음
 9)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10) 전기공급시설 : 변경없음
 11) 하수도시설 : 변경없음
 12) 저류지 : 변경없음
 13) 학 교 :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변경없음)

- 1) 단독주택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지(변경없음)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4) 상업용지(변경없음)
 5) 학교시설용지(변경없음)
 6) 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연구 1	연구 1	400,256.8	연구1	400,256.8	
연구 2	연구 2	33,459.0	연구2	33,459.0	
연구 3	연구 3	49,588.2	연구3	49,588.2	
연구 4	연구 4	77,977.7	연구4	77,977.7	지원시설용지->연구시설용지
연구 6	연구 6	59,744.0	연구 6	59,744.0	생산시설용지(외국인 투자지역)->연구시설용지
연구 7	연구 7	62,622.8	연구 7	62,622.8	생산시설용지(외국인 투자지역)->연구시설용지
연구 8	연구 8	32,488.1	연구 8	32,488.1	생산시설용지(외국인 투자지역)->연구시설용지
연구 9	연구 9	34,484.7	연구 9	34,484.7	생산시설용지(외국인 투자지역)->연구시설용지
연구 10	연구 10	58,768.3	연구 10	58,768.3	생산시설용지(외국인 투자지역)->연구시설용지
연구 11	연구 11	53,651.7	연구 11	53,651.7	생산시설용지(외국인 투자지역)->연구시설용지
계	11개 블록	863,041.3		863,041.3	

7)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지원 1	지원 1	29,752.7	지원 1	29,752.7	
지원 2	지원 2	113,851.9	지원 2	113,851.9	
계	2개 블록	143,604.6	2개	143,604.6	

8) 공공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9)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⑨ 주차장 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주 1	주 1	1,039.1	주 1	1,039.1	
주 2	주 2	825.2	주 2	825.2	
주 3	주 3	9,884.1	주 3	9,884.1	
주 4	주 4	2,713.9	주 4	2,713.9	
주 5	주 5	1,367.4	주 5	1,367.4	
주 6	주 6	1,948.0	주 6	1,948.0	
주 7	주 7	6,743.80	주 7	6,743.80	
주 8	주 8	575.0	주 8	575.0	
주 9	주 9	559.0	주 9	559.0	
주 10	주 10	1,344.5	주 10	1,344.5	
계	10개 시설	27,000.0		27,000.0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계획(변경없음)

(4)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V.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I 편 총론(변경없음)

제 II 편 부분별 시행지침(변경없음)

제1장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제2장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제3장 준주거용지(변경없음)

제4장 상업용지(변경없음)

제5장 연구 및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제6장 공공건축물(변경없음)

제7장 공공시설물(변경없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0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 능 환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1호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10제3항 중 “법 제218조의11제5항”을 “법 제218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136조의21제4항 중 “직인으로”를 “직인 또는 자신의 서명으로”로 한다.

별지 제59호의5서식 ※ 작성요령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신청서에는 여권사본과 함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하는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이나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해당란에 ☒ 로 표시하여야 하며, 붙임서류에 나열되지 아니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기타”란에 그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하는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

☞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확인 서류 중 어느 하나

☞ 국가별·공관별 제출서류의 종류는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 참조

②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복수국적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며, 증명서류는 대한민국에서 발행)

☞ 위 “①” 대신에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어느 하나

☞ “붙임서류”는 사진·성명·생년월일 등 관련 증명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A4용지(Letter지 포함)에 깨끗하게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며,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단,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다) 주 6. 및 주 7.을 각각 주 7. 및 주 8.로 하고, 같은 서식에 주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국적확인서류 제시 대상자”라고 기재한다.

별지 제59호의8서식 주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 3. 및 주 4.를 각각 주 4. 및 주 5.로 하며, 같은 서식에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여권원본 및 법 제218조의5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국적확인서류 제시 대상자”라고 기재한다.

별지 제59호의9서식의(나) 주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방법

가. “등재번호”란은 다음과 같은 대륙별·국가별·공관종류별·공관명 순서대로 각 재외투표관리관이 작성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등재번호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1) 대륙별 : 아주, 미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 지역순으로 기재한다.
- (2) 국가별 : 국가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재한다.
- (3) 공관종류별 :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순에 따라 기재한다.
- (4) 공관명 : 공관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재한다.

나. 법 제218조의18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국외거소·우편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외거소”란에 “재외투표소 투표자”라고 기재한다.

다. “재외투표용지 수령인”란은 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등 본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한다.

라. 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국적확인서류 제시 대상자”라고 기재한다.

마. 그 밖의 사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바. 윗란과 동일한 내용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쪽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사.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袋綴)하여 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도장을 찍는다.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다)·(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가)·(나)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15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시·도명	구·시·군명	① 공관명부 접수자			수정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④인구수 (연월일 현재)	인구수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	비고
		계	등재자	미등재자	증	감	구분	계	②공관접수 등재자	③구·시·군 접수 등재자			
							계						
							남						
							여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당초 통보된 공관명부 접수자의 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공관명부 등재자의 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 중 해당 구·시·군의 장이 접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한다.

④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3. 이 통보서에는 별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상황

접수 기관명	공관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1. 수정사유란은 구·시·군의 장이 수정한 내역을 기재한다.

2.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등재자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미등재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 “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 “미등재자”로 표기하고,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의 미등재자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경우 수정내용란의 수정전란에는 “미등재자”로, 수정후란에는 “등재자”로 표기한다.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다)]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시·도명	구·시·군명	①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②작관수정에 의한 감	③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④확정된 재외 선거인수	비 고
					증	감		
		계						
		남						
		여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①란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상의 재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②란은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사망·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재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③란은 재외선거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 및 재외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재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①란의 선거인수에서 ②, ③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이 통보서에는 별지 <재외선거인명부 수정 상황>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재외선거인명부 수정 상황

시·도명	구·시·군명	재외선거인명 부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 고
				수정전	수정후		

주: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①접 수 기관명	②국외부재자신 고인명부에 등재 된 선거인수		③직권수 정에 의 한 감	④이의신청 등의 결 정에 의한		⑤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⑥인구수 (연월일 현재)	인구수대비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비 고
				증	감				
	계								
	남								
	여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접수기관명”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접수기관”의 순에 따라 기재한다.
 -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서상의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전까지 사망·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 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④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 부 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 하여 증감된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서 ③, 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 ⑥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에 등재된 선거인수’·‘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3. 이 통보서에는 별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 상황>을 작성·첨부한다.

<별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수정 상황

접 수 기관명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 고
			수정전	수정후		

주: 수정사유란은 이의신청, 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기재한 다.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가)] (재외투표용지 우편발송용)

재외선거안내문 (표준서식)

□ 투표장소 및 투표기간

공관마다 설치하는 각 재외투표소의 소재지 및 운영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투표시간은 각 공관별 투표소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미지참시 투표할 수 없음)

-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서

※ 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하며, 그 서류의 원본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와 봉투 2종(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 투표방법

-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회송용 봉투에 확인인을 날인 받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서류의 원본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자명이나 소속 정당명 또는 기호를 한글이나 아라비아 숫자로 적은 후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 ③ 회송용 봉투를 풀 또는 양면테이프로 봉합합니다(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④ 봉합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 국외부재자신고인 또는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부재자투표기간 (. . . ~ . . .)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은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경우
-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경우(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하여 투표한 것은 제외)
-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로 적은 경우(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제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을 적은 경우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용)

재외선거안내문 (표준서식)

☐ 투표장소 및 투표기간

공관마다 설치하는 각 재외투표소의 소재지 및 운영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투표시간은 각 공관별 투표소 운영기간 중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미지참시 투표할 수 없음)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서

※ 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하며, 그 서류의 원본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 투표방법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서류의 원본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③ 회송용 봉투를 풀 또는 양면테이프로 봉합합니다(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 봉합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①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①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별지 제59호의15양식]

재외투표 발송용 봉투

(앞 면)

재외투표용지 · 재외선거안내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 82-2-000-0000)

□ □ □ - □ □ □

청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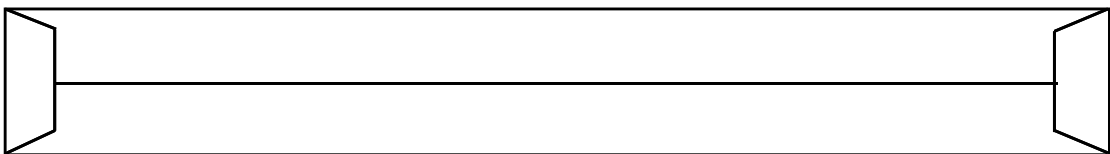
EMS 주소표지 붙이는 곳

재외투표소에 갈 때에는 꼭 이 발송용 봉투와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신분증명서(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하며, 그 서류의 원본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다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 공관마다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운영기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 주. 1. 이 봉투는 구·시·군위원회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 또는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보내는데 사용한다.
2. EMS 주소표지에 보내는 사람의 성명란에 구·시·군위원회 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좌측 상단의 구·시·군위원회 명과 청인은 생략할 수 있다.
3. 반송되는 경우에는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반송사유를 적는다.
4. 봉투앞면의 주의문을 뒷면에 인쇄할 수 있다.
5. 앞면의 기재사항과 배열을 조정할 수 있으며, 봉투의 빈자리에 투표참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다.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선거인 등 등록신청·신고 방법에 순회등록, 가족 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신고가 추가됨에 따라 그에 맞게 규칙을 개정함.

◇주요내용

- (1) 재외투표용지 작성을 위한 기계장치의 투표용지가 나오는 곳에 대한 봉인 방법으로 재외위원회위원장의 직인 날인 외에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서명하는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36조의21제3항).
- (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에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 등이 허용됨에 따라 그에 맞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59호의5서식, 별지 제59호의6서식의(다), 별지 제59호의8서식, 별지 제59호의9서식의(나),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다)·(라),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가)·(나), 별지 제59호의15양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기 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134 형사보상
 청구인 세계기업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동구 초량동 1203-10 오피스텔프레지던트 1405호
 대표이사 서민재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 9. 23. 선고 2011고단69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50,09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3. 28. 이 법원 2008고약187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4. 2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1고단69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1. 9. 23. 무죄를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9. 4. 29.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9. 4. 30.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350,095원[=300,000원+50,095원{=300,000원×0.05×(3+124/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350,0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2 형사보상
 청구인 육일운수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33-89
 대표이사 이수영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5. 23. 선고 2012고단16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7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3. 이 법원 2001고약950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3.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2. 6. 2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16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5. 23. 무죄를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2. 6. 27.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2. 6. 28.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754,452원[=500,000원+254,452원{=500,000원×0.05×(10+65/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되나,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보상결정을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75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3 형사보상
 청구인 육일운수산업 주식회사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33-89
 대표이사 이수영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5. 23. 선고 2012고단16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94,6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1. 28. 이 법원 2005고약731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5. 12.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6. 3. 10.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16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5. 23. 무죄를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6. 3. 10.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6. 3. 11.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397,150원 [=300,000원+97,150원{=300,000원×0.05×(6+174/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394,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4 형사보상
청 구 인 대북운수 유한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50-6 한양타워빌 501호
대표이사 김옥상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5. 23. 선고 2012고단16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53,36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3. 28. 이 법원 2008고약187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2. 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16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5. 23. 무죄를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9. 2. 9.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9. 2. 10.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353,360원[=300,000원+53,360원{=300,000원×0.05×(3+204/366)},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353,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5 형사보상
청 구 인	금마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금정구 구서동 420-12 구서동유림노르웨이아침 제3층 제319호
	대표이사 최영숙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4. 20. 선고 2012고단16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88,93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9. 26. 이 법원 2005고약5870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5. 10.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6. 9. 2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16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4. 20. 무죄를 선고받아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6. 9. 26.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6. 9. 27.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388,934원 [=300,000원+88,934원{=300,000원×0.05×(5+340/366)},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388,9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6 형사보상

청 구 인 금마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금정구 구서동 420-12 구서동유림노르웨이아침 제3층 제319호
대표이사 최영숙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3. 19. 선고 2012고단14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757,46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7. 10. 이 법원 2001고약457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2. 5. 1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14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3. 19. 무죄를 선고받아 2012.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2. 5. 14.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2. 5. 15.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757,465원[=500,000원+257,465원{=500,000원×0.05×(10+109/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57,4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7 형사보상
 청구인 금마통운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금정구 구서동 420-12 구서동유림노르웨이아침 제3층 제319호
 대표이사 최영숙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4. 20. 선고 2012고단14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420,32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5. 25. 이 법원 2004고약3174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6.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4. 8. 2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143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4. 20. 무죄를 선고받아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4. 8. 23.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4. 8. 24.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20,328원 [=300,000원+120,328원{=300,000원×0.05×(8+8/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420,3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8 형사보상
 청구인 유한회사 대진통운
 소재지 부산 남구 감만동 82-2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조정대

무 죄 관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3. 16. 선고 2011고단125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619,94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 4. 5. 이 법원 2007고약228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9.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11. 1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1고단1254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3. 16. 무죄를 선고받아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7. 11. 13.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7. 11. 14.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19,945원[=500,000원+119,945원{=500,000원×0.05×(4+292/366),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19,9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79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우성통운

소재지 밀양시 무안면 양효리 270-1

송달장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222-2

대표이사 박태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5. 23. 선고 2012고단16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405,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7. 4. 이 법원 2005고약361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5. 8.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5. 8. 2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16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5. 23. 무죄를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5. 8. 29.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

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5. 8. 30.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05,082원 [=300,000원+105,082원{=300,000원×0.05×(7+2/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405,0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0 형사보상
 청구인 동화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18-10
 대표이사 양기주, 양종훈
 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무죄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1. 31. 선고 2011고단108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783,63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24. 이 법원 2000고약8770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1. 4. 2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1고단108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1. 31. 무죄를 선고받아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1. 4. 27.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1. 4. 28.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783,630원[=500,000원+283,630원{=500,000원×0.05×(11+126/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83,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1 형사보상

청 구 인 세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금정구 부곡동 23-8

대표이사 박태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3. 19. 선고 2012고단14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721,994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5. 이 법원 2002고약4500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3. 10. 1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

원 2012고단144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3. 19. 무죄를 선고받아 2012.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3. 10. 14.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3. 10. 15.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721,994원 [=500,000원+221,994원{=500,000원×0.05×(8+322/366),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721,9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3 형사보상
 청구인 주식회사 수경운수
 소재지 경남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884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에스케이뷰 오피스텔 102동 404호
 대표이사 장석훈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40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898,71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3. 10. 이 법원 2003고약1163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4.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6. 12. 2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40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6. 12. 27. 벌금 7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6. 12. 28.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898,715원 [=700,000원+198,715원{=700,000원×0.05×(5+248/366)},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898,7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4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진성상운
	소재지 양산시 북부동 148-19 북부시장 2층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자 사내이사 강대혁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40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581,02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7. 8. 31. 이 법원 2007고약6100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1.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6. 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403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9. 6. 4.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9. 6. 5.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581,027원[=500,000원+81,027원{=500,000원×0.05×(3+88/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581,0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5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39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435,73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6. 27. 이 법원 2003고약336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8.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3. 8. 1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39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3. 8. 13.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3. 8. 14.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35,739원 [=300,000원+135,739원{=300,000원×0.05×(9+18/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435,7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6 형사보상
 청구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무 죄 관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38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68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8. 9. 이 법원 2002고약488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5. 4. 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38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5. 4. 7.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5. 4. 8.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85,000원[=500,000원+185,000원{=500,000원×0.05×(7+146/365)}]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7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39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410,46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2. 28. 이 법원 2005고약894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5. 3.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5. 4. 20.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39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5. 4. 20.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

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5. 4. 21.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10,465원 [=300,000원+110,465원{=300,000원×0.05×(7+133/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410,4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8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41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006,68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9. 5. 이 법원 2003고약528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9.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3. 11. 2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41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3. 11. 26. 벌금 7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3. 11. 27.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1,006,680원[=700,000원+306,680원{=700,000원×0.05×(8+279/366),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1,006,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89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39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85,69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10. 30. 이 법원 2006고약6556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1.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6. 12. 1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39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6. 12. 14.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6. 12. 15.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385,696원 [=300,000원+85,696원{=300,000원×0.05×(5+261/366),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385,6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90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39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427,39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31. 이 법원 2003고약906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

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4. 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4. 3. 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397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4. 3. 4.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4. 3. 5.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27,397원[=300,000원+127,397원{=300,000원×0.05×(8+180/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427,3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91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40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411,36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8. 11. 이 법원 2003고약487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5. 3. 2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30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5. 3. 29. 벌금 3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5. 3. 30.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411,369원 [=300,000원+111,369원{=300,000원×0.05×(7+155/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411,3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2코92 형사보상
청 구 인 금재종합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587-4 연산동에스케이뷰 102동 304호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0-1 부산법조타운 12층

대표이사 이장수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6. 25. 선고 2012고단39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68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 4. 8. 이 법원 2003고약1716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3. 5.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5. 4. 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인 이 법원 2012고단393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2012. 6. 25. 무죄를 선고받아 2012.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5. 4. 7. 벌금 500,0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5. 4. 8.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2. 8. 31.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685,000원 $[=500,000\text{원}+185,000\text{원}\{=500,000\text{원}\times 0.05\times(7+146/365)\}]$ 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형사보상금으로 6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31.

재판장	판사	박주현
	판사	박은주
	판사	박민준